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반봉건성' 비판을 위한 예비적 고찰*

김 승 석

경 제 학 과

<요 약>

한국의 근·현대사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 크게 규정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시대부터 자본-임노동관계는 크게 확대되고 심화되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때 한국사회에서의 반봉건성은 일시적 과도적 현상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한국사회의 자본주의화 과정의 일환으로 파악되어야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근·현대사에 있어서 반봉건의 개념을 비판하기 위하여 그 준비작업으로 지금까지의 제논의를 논쟁사적으로 비판 검토하는데 있다.

Preliminary Study for the Critique of Semi-Feudalism in modern History of Korea

<Abstract>

Modern history of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the world capitalist system. In spite of that, the relation of capital and wage has been expanded and deepened from the colonial days. In this view point, semi-feudalism in Korea was a transient phenomenon. And it should be recognised as the process of Korea's capit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all the arguments critically as a preliminary work in order to criticize the character of semi-feudalism.

목 차

- I. 머리말
- II. 식민지시대 농업에 관한 논쟁
- III. 8·15의 경제적 의미
- IV. 농지개혁 및 현행 재생소작제를 둘러싼 제논쟁.
- V. 결론을 대신하여

I. 머리말

현재 한국사회는 분단상황에 처해있고 선진자본주의 제국에 의해 규정받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비민주적 요소가 산재해있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한국사회가 갖는 이 세가지 성격은 결코 분리된 문제가 아니며, 근·현대사의 역사발전과정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지양해야 될 모순의 총체이다. 이러한 모순의 역사가 현상적으로 단절성을 띠었다고 할지라도 그 단절현상을 고립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상분석 내지 현상추수주의에 불과하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규정되었던 구식민지 시대와 미국등 선진자본주의제국에 의해 규정되어온 신식민지 시대는 통일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그 통일적 파악을 위한 근거 내지 관찰양식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구식민지 시대는 일본 독점자본주의에 의한 직접적 지배가 행해진 시대였기에 민족해방운동이 매개함없이 도출될 수 있었으며 계급관계도 역사적 경향으로 볼 때 대다수의 민중이 무산화되는 그러한 시기였다. 그러나 2차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전반적 위기의 심화, 사회주의 세력의 강화, 세계 여러지역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에 힘입어 구식민지체제는 붕괴하고 미국을 중심으로하는 선진자본주의제국에 의한 세계경제의 재편성이 시도되었다. 이들은 국가자본수출로써 초과이익의 획득이라는 직접적인 목적을 수행할 뿐 아니라 신생독립국가에 부르조아 정치와 자본주의의 기초를 강화하여 집단적 신식민주의를 확립했다.¹⁾ 이것은 경제적 착취와 국가독립을 획득한 개발도상국 대중의 의존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진제국이 채택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방식의 총체²⁾로서 일정한 지역의 형식적 독립이 인정되는 하나의 "정책"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식민지상황이라는 통일적 구조속에서 구식민지 시대와 신식민지 시대를 차별적으로 파악해야 한국의 사회경제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통일적 구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독점자본의 논리³⁾가 구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관찰되고있다는 사실이다.

산업자본주의단계를 거친 자본주의제국에서 생산의 집중 및 집중에 의해 성립한 독점체가 은행과 유착함으로써 금융자본을 형성하고, 구래의 상품수출대신 자본수출을 행함으로써 자본주의는 자신의 새로운 단계를 설정한다. 세계시장의 경제적 분할 및 세계의 영토적 재분할

1) V.L.Li, *The ideological Principles of Neo Colonialism*, International Affairs, 1966, 11.

2) 편집부역, 『정치경제학원론』, 녹두, 1986, 360면.

3) "독점자본운동의 인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독점자본의 범주는 사회적 지배관계로서의 지배구조라는 점이다. 그것은 결코 개별적인, 영향력이 큰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지배적 역할에 의한 총체적인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서 파악되어야한다. 따라서 그것은 대·중소기업의 문제와 같은 단순한 양적 범주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특수한 형태와 구조로서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지배적 계기가 되는 질적 범주를 뜻한다." 황한식, 「개방체제하의 한국농업의 성격」 『한국경제론』 까지, 1987, 257면.

을 위한 제국주의 제국가간의 투쟁이 20세기초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세계체제의 이러한 조건속에서 제국주의는 자본수출⁴⁾을 통하여 자본이 투하되는 나라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자본주의적 제국계를 확대한다. 반면 그러한 과정은 민족적 억압을 수반하고 그에 대한 투쟁을 확대 격화시킴으로써 민족전쟁을 야기시킨다.

본고에서는 자본주의제국가에서는 불균등 발전이 초래되며,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침투한 일정한 지역내에서도 역시 농업부문과 공업부문간에는 그 불균등이 내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로 이 점이 종속이론 및 그 아류가 주장하는 「제국주의의 이중성」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한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사회구성을 파악할 때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로 파악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농업부문만을 봉건성과 자본제성의 기준으로 일면적으로 고찰해 온 지금까지의 제논의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농업부문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봉건성과 자본제성의 구별은 첫째, 자연경제(자급자족경제)인가 화폐경제(교환경제)인가 둘째, 직접생산자의 토지로 부터 이탈은 자유가 있는가 셋째, 한 사회구성에서 재생산구조를 유지시켜주는 매개가 경제외적 강제인가 경제적 강제(계약)인가에 의해 파악할 때 만이 명확해진다고 본다.⁵⁾

이상의 관점에 서서 그동안 한국사에 관철되었다고 언급되는 「반봉건성」에 대한 논의를 비판하고자한다. 이하 2절에서는 자본주의의 특징인 불균등발전론에 입각하여 구식민지 시대 한국사회의 농업부문에 대해 그간의 그간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 3절에서는 8·15와 그 경제적 의미를 고찰한다. 4절에서는 신식민지하 한국사회의 농업부문에 대해 농지개혁의 평가와 현행 재생소작제를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제논의를 살펴본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있는 재생소작제를 근거로 반봉건성을 일정하게 비판하고자한다. 이 점에 있어서 토대적인 측면을 주로 논의하는데 이는 소위 식민지 반봉건사회 성질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의 반봉건성⁶⁾ 혹은 국가부문의 반봉건성⁷⁾이 토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재 내지는 일중

- 4) 여기에서 우리는 자본이 物自體(소적적 측면에서의 자본)만으로서가 아니라 타인노동에 의한 지배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한다. “자본가와 임노동자의 생산은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의 주요한 산물이다.” “결국 자본이란 명백히 하나의 관계이고 게다가 생산관계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마르크스의 명제를 다시 한번 반추해보아야 한다. (K.Marx, *Formen, die der Kapitalistischen Produktion vorhergehen*, 성낙선 옮김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 지평, 1988, 61~63면 참조.)
- 5) 이와 같은 봉건성과 자본제성의 구별이 도식화된 염려가 없지않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봉건성이란 성격논쟁에 접하게 될 때 이것의 질적 규정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에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는 우선 봉건성에 대해 잠시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한다. 봉건제의 본질은 봉건적 대토지소유와 생산과정의 개인적 성격에 있다. 이런 봉건적 생산양식의 재생산구조는 생산수단(토지)의 소유관계를 기반으로 생산과정의 결과물인 생산물이 경제외적 강제를 매개로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취득된 잉여노동의 대부분은 개인적 소비, 사치, 지배·예속관계를 유지하는데 지출되고 전쟁등 비생산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봉건적 생산양식은 단순재생산으로 나타나지만 직접생산의 생산방식 내부에서의 자립성이 어느 정도 축적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 6)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의 반봉건성을 주장하는 예로 하나만을 지적한다면 가족제도에서의 가부장권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가부장권은 남성우위사회에서는 어디서나 존재하며 특히 자본제 사회에서 가족제도의 특징으로 남성우위, 재산상속, 가부장권, 매춘제도등을 들 수 있기 때문에 반봉건성의 근거로 가부장권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이다. 반봉건론자들은 현재 존재하는 것중 나쁜 것이면 모두 반봉건성으로 치부하려는 관념성을 갖고 있다.
- 7) 국가부문의 반봉건성의 예로 파쇼체제의 국가를 들고있는데 원래 파쇼체제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심화되자 이에 대한 자본의 적극공세로서 새로운 형태의 계급독재를 취한 방식이기 때문에 반봉건성의 예로서는 부적절하다.

의 관념성을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I. 식민지시대 농업에 관한 논쟁

일정한 시대에 있어서 농업이 지배적인 산업일 경우 그 농업의 역사적 성격을 구명하는 일은 한 시기의 해석일 뿐 만 아니라 그 시기의 모순을 지양하는데 변혁이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가 있다. 즉 농업이 지배적인 사회에 있어 농업부문을 지배하는 경제법칙의 연구는 곧 그 사회경제의 발전단계와 역사적 성격을 구명하려는 과학적 제작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농업이 지배적이었던 구식민지시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 시대를 규정했는가 나아가 그 사회는 어떠한 사회로 위치시킬 수 있는가 따라서 그 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어떤 계급이었는가를 구명하는 작업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는 일본의 강좌파 대 노농파, 중국의 봉건파(중국농촌파) 대 자본파(중국경제파)와 같은 체계적인 논쟁은 없었지만, 식민지 조선의 농업에 대하여 印貞植으로 대표되는 「봉건성의 심화」라는 견해와 津曲藏之丞에 의해 대표되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이라는 견해가 존재했다.

印貞植은 『朝鮮の農業機構』에서 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

“조선의 농촌사회는 외래자본주의와의 불가피한 접촉에 의하여 자본제적 유통 및 축적의 제도 내부에 급격히 그리고 진밀히 종속 편입되어 그 봉건성해체를 위한 자극과 충동을 부단히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급일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봉건적=반농노적 수취관계의 제특징을 확보 지속해가면서 오로지 비자본주의적 외위로서의 역사적 과제에 충실하고있다. 전일본경제는 특히 20세기 초 이래 독점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조선에 있어서 구래의 봉건적=반농노적 제관계를 근본적으로 소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후자의 확대 심화를 물질적 기반으로 조선을 재편성했다.”⁸⁾

그리하여 그는 일제하 조선의 농업을 지주제가 확대되고 소작료가 고율화하는것을 그대로 봉건성의 확대 심화로 보고 있는 바, 이것은 앞 절에서 언급한 3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지주제의 확대가 그 지주의 계급적 존재를 확보해 줄 수 있는지 또한 소작료의 고율화가 과연 봉건성의 기준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논지의 쫓점이 흐려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津曲藏之丞은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중래의 봉건적 토지소유는 해체하고 자영농민에 의한 과소농은 그 경제적 기초를 실추하였으며, 이들 농민은 일본 또는 만주 기타에 이주하여 임노동자로 몰락하거나 또는 농업상의 임노동자로 전화하거나 어느 것을 강요당하였고 스스로 경작하지 않는 대지주는 매년 증가하여 간다는 경향, 환언하면 유일한 생산기관인 토지를 차례로 자본화하는 경향을 알아 볼 것이다. 물론 이것이 극히 초기의 단계에 있다는 것은 말 할것도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의 발전이 진행도상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별족계급은 자본계급으로 전화하고 자본계급의 자유발달조장은 한편 무산농민계급을 파생시켰으며 타

8) 印貞植, 『朝鮮の農業機構』, 白揚社, 1940, 233면.

산업이 발흥하지 못한 오늘날에 있어 자본계급은 결국 지주 또는 대농경영자가 되고 궁민은 스스로 살과 피의 판매자인 일고노동자가 된다.”⁹⁾

津曲은 소작제의 확대과정을 단순히 봉건적 생산관계의 확대로 보지 않고 무산농민의 확대창출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농민층분해에 의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체로 일본인 학자들 및 朴文圭는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그들은 일본독점자본과 농민간의 문제를 사상한 공식주의적 입장에 불과하다.

한편 朴文圭는 1910~18까지의 토지조사사업을 기점으로 조선의 농업에서는 반봉건적 생산관계가 확립된다고 본다.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토지조사 사업은 그것이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 봉건적 제한 속박을 철폐하고 순 봉건적 토지소유를 파괴한 한에서는 농촌사회의 새로운 계급분화를 위하여 광범한 통로를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확실히 큰 진부적인 내용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본가적 생산체력의 완전한 해방, 일 반농민의 봉건적 착취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견지에서는 전혀 불철저한 것이었고 오히려 과거시대로부터 그대로 단속된 영세농적 생산양식의 기초위에서 반농노적인 생산방법을 재생산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전혀 진보적인 내용을 결여하고 있었다.”¹⁰⁾

朴文圭는 봉건적인 조선의 농업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반봉건적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있어서 반봉건적이란 소유의 근대성과 생산양식의 전근대성간의 모순을 의미한다. 또 그는 이러한 반봉건적 생산관계의 지배하에 있는 영세농민을 소경영생산양식론 특히 농민적 분할지소유론에 기초하여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관계와 소유관계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朴文圭의 이론은 해방후의 많은 사회경제학자들에 영향을 주었고, 그들은 일제하 농업부문의 성격을 반봉건적 생산관계가 지배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權泰燮에 의하면 일제하의 식민지시대 “사회경제구조로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적으로 되어있으나 그 생산제관계는 과거의 생산양식과 그 요소의 완전한 파괴=폐허위에 구축된 사회적 구조는 아니고 봉건적 농업관계를 다만 근대적, 사적관계로 재편성하고 확보하여 자기의 사회체제에 통합시킨 것이다.”¹¹⁾ 따라서 자본제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의 반봉건제는 범주적으로 규정할 때 봉건제의 범주에 속하지만 형태변화에 있어서는 근대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全錫淡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생산의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봉건적 관계가 지배적이며, 유통부문은 근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등가교환이 봉건적 고리대적 모든 제약으로 인하여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¹²⁾

이와 같이 8·15직후의 사회경제사가들은 반봉건성을 세련된 형태로 이론화 하지는 않았지만 지주제하에서의 고율소작료는 봉건시대라는 지대론적 입장과 농업부문의 생산관계와 농업부문의 형식적 변화 예를 들면 토지의 자유처분, 금납지조, 농민이촌의 자유등을 총괄하여

9) 津曲藏之丞, 「朝鮮における小作問題の發展過程」, 金洛中 「韓國農業과 資本主義」에서 재인용

10) 朴文圭, 「農村社會化の起點として土地調査事業について」 『朝鮮社會經濟史研究』, 京城帝大 法文學會, 1983, 528~9면.

11) 權泰燮, 『朝鮮經濟의 基本構造』, 朝鮮時論社, 1949, 102~3면.

12) 全錫淡, 『朝鮮經濟史』, 博文出版社, 1949, 270~71면 참조.

반봉건으로 성격지우고 있다.¹³⁾

이와 같은 반봉건성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 이르러 정교화되고 사회구성체론으로까지 격상되었다. 이러한 이론화작업은 고다니(小谷汪之)의 「(半)植民地 半封建 社会構成體論의 概念規定」에서 결실을 보았고 가지무라(梶村秀樹)의 「旧植民地 社会構成體論」에서 이민주의 증속 이론과 결부되어 식민지 반봉건 사회구성체론을 성립시킨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들 이론 특히 고다니의 이론이 안병직교수에 의해 적극 수용되었고 장시원교수에 의해 구체적인 실증작업이 시도되었다.¹⁴⁾ 이들의 문제의식은 “구식민지를 경험한 아시아 근대사를 연구할 경우 세계자본주의가 한편으로는 후진제지역에 자본주의화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동성으로 말미암아 후진제지역은 그 사회구성에 있어서 자본주의와는 다른 특질을 갖는다”¹⁵⁾는데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후진지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지배세력으로서의 (반) 식민지는 상부구조를 형성하고 세계자본주의에 의해 규정된 지주제는 농촌의 지배적 생산관계로서 반봉건적이며 그것이 하부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사회구성체의 요건을 갖췄다고 한다.

식민지반봉건 사회구성체론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¹⁶⁾ 장시원교수는 최근 자기비판의 과정속에서 식민지반봉건사회 구성체론의 입장을 포기하고 식민지 반봉건사회를 과도적 사회로 보는 입장으로 후퇴한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교수는 다음과 같이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이론구조를 기초지운다.

“제국주의가 식민지사회에 침입한 목적은 전근대적 상태의 식민지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로 변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지배국을 그들의 식민지로 변모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국주의는 식민지사회에 대하여 끊임없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모든 억압수단을 강화한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파괴적 영향을 다른 한편으로는 본의아니게도 식민지사회에 있어서 구래의 봉건경제의 기초에 대한 해체작용을 가속화하고 상품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식민지사회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을 위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가능성과 조건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이중성이다.”¹⁸⁾

13) 이에 반하여 金俊輔교수는 일제하 조선농업부문의 지주·소작관계에 의한 소작료를 봉건적 지대로 보지 않고 과거봉건적 지대가 한일합병을 전후하여 “근대적 지대”로 진화했으며 1930년대의 농업공황은 “소작료의 이윤화, 소농소득의 노익화”를 촉진시켰다고 파악하며 일제하의 소작농의 성격을 독점적 금융자본하의 실질적 임노동자로 간주한다. (金俊輔, 『農業經濟學序說』, 고대출판부, 1967, 301~2면 참조). 이와 더불어 金洛中선생은 일제하 자작농의 성격을 토지에 대한 자본가 및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임노동자로 파악하여 자본가 및 소소유자로서의 이윤 및 지대가 합체되어있고, 임노동자로서는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金洛中, 앞의 논문, 참조).

14) 安秉直 「朝鮮에 있어서 (半)植民地 半封建社會의 형성과 日本帝國主義」, 한국사연구회편, 『韓國近代社會와 帝國主義』, 三知院, 1985, 張矢遠, 「植民地半封建社會論」, 李大根外編, 『韓國資本主義論』, 가치, 1984년 참조.

15) 安秉直, 앞의 논문, 187~9면 참조.

16) 식민지 반봉건 사회구성체론에 대한 유효한 비판으로서 이병천, 「식민지반봉건 사회구성체론의 이론적 제문제 —小谷汪之, 梶村秀樹의 이론을 중심으로」 『산업사회연구』 제2집, 김승석, 「중국사회성질논쟁에 부쳐」 『식민지반봉건 사회론연구』 아침, 김대환, 「(半)植民地半封建社會論: 사회구성체론인가 정세론인가」 『중국사회성격논쟁』 창작과 비평사, 1988, 참조.

17) 과도기로서의 식민지반봉건 사회론에 대한 장교수의 논문에 대한 비판은 김석민, 「일제하 조선농업의 성격에 관한 일 연구」, 『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 아침1986년을 참조하라.

18) 張矢遠, 「韓國近代史에 있어서 '植民地半封建社會論'의 적용을 둘러싼 이론적 실증적 제문제」, 『韓國資本主義 性格論』 大旺社, 1988, 289면.

이와 같이 독자적인 재생산구조를 갖는다는 식민지반봉건 사회구성체론이나 과도기로서 파악하는 식민지반봉건 사회론에서는 모두 제국주의의 이중성이 가장 기본적인 이본구조를 형성하고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후진제지역에 침투하면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현저하게 촉진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구래의 생산양식을 유지, 온존시킨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제국주의의 이중성은 한 사회에 현상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정태적으로 파악하는 단순서술에 불과하다. 제국주의의 주체가 바로 독점자본이라고 인정한다면 제국주의 규정적 목적은 피지배국을 식민지로 변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획득하는데 있으며 초과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피지배국을 식민지로 변모시키는 정책이다.

외국 자본주의의 침입이 상품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식민지의 사회경제에 대한 자연경제의 기초를 파괴하고 가내수공업을 파괴하여 노동력시장을 형성시키는데 이것은 곧 자본주의의 객관적 조건과 가능성을 촉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역사과정이란 차원에서 파악할 때 자본주의 맹아의 유무와 관계없이, "식민지사회에 도입 이식된 자본제적 생산관계는 단순한 외피가 아니라 그 안에 식민지 모국의 발전된 생산력을 싸고 있다"¹⁹⁾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국주의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모든 억압수단을 이용하여 구래의 봉건세력과 결탁하여 자본주의적 발전을 억압한다는 내용은 이미 자본제화된 부분의 착취와 더불어 외국자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편입되어가는 부분에 자립적인 재생산구조를 구축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의미로서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과정속에서 나타난 모순의 심화 내지 모순구조의 연속성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²⁰⁾ 식민지적 상황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필수적인 매개항이 자본수출이며, 그것을 단순히 소재적인 의미의 자본수출이 아니라 사회적 제관계로서 자본의 수출이라는 측면과 통일적으로 파악한다면, 반봉건의 개념은 세계자본주의에 규정된다는 의미에서의 반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국제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의 반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소위 제국주의의 이중성이란 한 내용을 갖는 두개의 현상에 불과하며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없도록 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제국주의의 이중성 그 자체는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자본수출에 기인한 불균등발전의 현상적 측면이며 그것은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구래의 생산양식을 끊임없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합치시켜나가는 통일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과도적 범주로서의 반봉건성이란 의미도 자본주의화 과정의 산물로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III. 8·15의 경제적 의미

사회주의 소련의 세력확대는 미군의 남한 진주에 있어서 양대진영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제 관계를 야기시켰고 이들 관계가 한국사회를 규정하면서 그 역사적 특수성을 발현시켰다. 즉 2차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미국은 해방군으로서가 아닌 점령군으로서 남한에 진주하였다. 이것은 하지(Hodge)의 지령에 잘 나타나고 있다.

19) 김대환, 앞의 책 107면.

20) 식민지반봉건 사회론자들의 모순개념에 대한 비판은 김석민, 앞의 논문 70~71면을 참조하라.

“한국은 일본제국의 일부로서 우리(미국)의 적국이다. 따라서 항복조건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적어도 초기에 있어서 대한점령정책은 일본의 행정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중 우리는 일본의 통치기구—조선총독부—를 한국에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 한국인들이 자주독립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 점에 있어서 연합국의 정책은 내가 알고 있는한 아직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²¹⁾

이와 같은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본방침은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과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신탁통치, 감정적으로는 분할점령이라는 임기응변적인 양면성을 띠고 있었으며 이 분할점령은 이미 남한 진주시기부터 고정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방 또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시기를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며 또한 미국의 대한점령에 있어서 무준비성이나 잠정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세력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이 일관해서 고수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군정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미국의 국무성 및 국방성과 동경의 맥아더 사령부 그리고 남한에 진주한 하지장군의 미 육군 24사단등 정책결정자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분명한 대한정책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대한전략은 이미 미국의 입장에서 고수하고 있었다.²²⁾ 따라서 한국 내부의 식민지체제의 해체라고 하는 의미의 해방이라기 보다는 사회주의에 대한 전진기지로서의 성격이 이 시기를 규정짓는 요인인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 기본전략 때문에 미군정기의 경제정책은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재편 유지시키는 정책으로 일관된 바 일본의 경우처럼 강력한 민주화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소전략의 차원에서 부분적 개혁에 그치게 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난 민족의 일반적 당면과제인 “자본제화의 식민지 종속형이 갖는 허구를 청산하고 그 형식에 새로운 근대화 내용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했으며 자본제화에 따르는 역사에서 긍정성을 실현”²³⁾할 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같은 변혁의 계기는 결코 충족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미군정의 남한지역에 대한 점령정책은 당초부터 정치 및 경제상의 단일권이라는 원칙에 국한해서 미군정 경제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경제상태는 극도로 팽박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 민족에 있어 주체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분단상황 아래서 경제적 통합을 위한 노력은 대규모의 민간무역의 형태 그것도 비합법적인 밀무역의 형태로 진전되었다. 따라서 전후 우리 민족은 주어진 상황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면서 주어진 역사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갖고있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노동자 농민에 의한 자주관리²⁴⁾, 토지개혁을 위한 노력²⁵⁾, 경제적 통합을 위한 남북간의 경제적 교류²⁶⁾등이다. 그러므로 미군정기가 미국의 대한 기본전략이 남한의 경제상황을 크게 규정했던 시기라 하더라도 자주적이고 통일적인 민주주의 국가수립을 위한 주체적 노력이 결여되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민족주의적 저항에서 그 맥락을 갖는 주체는 세계자본주의 질서의 재편

21) 이종훈, 「미군정 경제의 역사적 성격」,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9, 450~51면.

22) 커밍스는 미국의 대한전략이 기본적으로 봉쇄정책이었다고 본다. B.Cummings, 박의경역 『한국전쟁과 한미관계』 청사, 1987, 제1장 서론을 참조.

23) 박현채, 「남북분단의 민족경제사적 위치」, 『해방 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216면.

24) 성한표, 「8·15 직후의 노동자 자주관리운동」, 『한국사회연구 2』, 한길사, 1984, 참조.

25) 장상환, 「농지개혁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대 석사학위 논문, 1985, 제2장 참조.

26) 박현채, 앞의 논문, 참조.

성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의해 그 합법성이 철저하게 부정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8·15는 민중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 제국주의 억압으로 부터의 해방이라기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체제적 모순, 제국주의 제국가간의 모순에 의해 타율적으로 주어진 한정적인 해방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를 계기로 하여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미국과 사회주의세력의 확대를 시도하던 소련과의 진영모순은 한반도 전체를 규정하게 되었다. 이와 결부되어 전세계적인 민족해방운동은 구식민지체제의 전반적인 붕괴를 가져왔고, 이를 계기로 남한에서도 일정한 제약상태에서나마 자본운동의 자유로운 보증자가 창출되었다.

IV. 농지개혁 및 현행 재생소작제를 둘러싼 제논쟁

우리는 보통 해방의 역사로서 8·15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인색하지 않지만, 현재까지의 역사적 과정에서 8·15가 구식민지시대로 부터 주요과제로 등장한 민족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가 분명 분단의 역사였고, 분단상황 역시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함께 반드시 극복 내지는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미군정기의 성격, 특히 우리가 문제로 삼고있는 군정기의 주요 농업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 후 내외 독점자본의 지배하에서 파생된 현행 재생소작제에 대하여 기본적 규정요인이 무엇인지를 그간의 논의를 통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의 대한 기본전략이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재편 및 유지라는 한계내에서 취해진 귀속농지의 접수 및 신한공사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면, 1945년말 현재 남한의 총 경지면적은 논 126만정보, 밭 97만정보로 도합 223만정보에 달하고 이 중 전일본인 소유지는 논 18만정보, 밭 5만정보로 전체 농경지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었다.²⁷⁾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일본의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공적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1945년 10월 17일경 미군정청에 접수되었다. 이것은 같은 해 11월 新韓公社로 개명되어 활동을 재개했는데, 신한공사는 동척에 소속되었던 재산과 일본 法人 및 개인소유의 토지를 관할했다. 1947년의 경우 신한공사 소유농지는 남한 전체의 15.3%였지만 신한공사 소작농가는 전체농가의 28.5%로서 전체 농지의 27.7%(논의 30.5%)를 경작하고있었다.²⁸⁾

그러나 당시는 좌우익간의 극심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상태에 있었으므로 토지문제의 처리에 의견이 통합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8.15이후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식량부족과 농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에 기인한다고 생각한 미군정은 남한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토지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1946년 3월 북한이 먼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개혁법을 공포하게되자 미군정청은 남한에서의 토지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8년 3월 22일 이른바 中央土地行政處를 설치하는 동시에 신한공사 소속의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게되었다. 귀속농지의 분배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고 실시되었다.²⁹⁾ 첫째, 농지분배의 우선 순위를 ①현 소작

27) 朝鮮銀行 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 I-36~I-37면.

28) 소작농가들은 한국인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고 자작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농지의 27.7%를 경작한 것으로 된다. 김기원,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방통대 논문집』, 제5집, 1986, 342면.

29) 이대근, 『미군정하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평가』, 『한국사회연구』, 한길사, 1983, 422면.

인 ②농지주변에 거주하는 농민 ③농업노동자 ④월납한 농부 ⑤해외로부터 귀환한 농부순으로 하되 3정보를 농지소유상한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농지가격의 규정은 당해 농지 주산물의 연평균 생산량의 3배로 하고 셋째, 대금지불방법은 연간 생산량의 20%씩 15년간 현물로 분할 지불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 대금완불 또는 향후 10년내에는 분배농지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시켰으며 또한 토지분배 대금은 물론 세금·수리조합비등을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분배계약을 취소하고 기상환대금의 75%를 변제하도록 되어있었다.

다음 소작료율의 조정과 귀속농지의 불하를 살펴보면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소작료를 생산물의 1/3로 제한하는 이른바 3·1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3·1제는 발표 당시 농지개혁과 무관하였고 급진세력의 3·7제 주장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즉 급진세력은 일제와 민족반역자, 대지주, 고리대업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고 중소지주의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3·7제의 소작료 투쟁을 전개하지만 장차 자경지 이외의 토지를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3·1제는 현물납이었지만 3·7제는 금납을 주장했으므로 3·7제에 따른다면 당시의 격심한 물가상승하³⁰⁾에서는 지주가 자연도태될 상황이었다. 그 밖에 수세납 부등 제반 경비부담에 있어서는 3·7제가 소작농에 유리하였다. 따라서 소작료율을 3·1제와 3·7제로 단순비교하여 미군정청의 농업정책과 전국농민총연맹의 그것을 비슷한 성격으로 위치지우는 것은 양자의 계급적 입장을 회색시키는 파악에 불과하다.

결국 귀속농지의 분배사업에 있어서 1948년 현재 분배대상의 농지면적은 논 206,000정보, 밭 62,600정보 도합 268,600정보였는데, 같은 해 9월 6일자 미군정청의 발표에 의하면 목표의 75%를 달성하여 분배받은 소작농가수가 약 445,000호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³¹⁾ 그러나 농지개혁이 일단락되었다고 보는 1957년 말까지도 그것은 논 161,000정보, 밭41,000정보로 도합 202,000정보의 분배실적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1948년 당시 신한공사 관리하의 총경지면적 282,000정보의 71.6%로서 당시의 발표는 과대평가된 것이다.³²⁾

그렇다면 우리는 미군정기의 귀속농지 불하 및 그후의 농지개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먼저 귀속농지불하를 포함한 농지개혁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것을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으로서 파악해야한다. 즉 귀속농지를 불하받은 소작농들이 그것을 상환함에 있어서 이미 채무상태에 놓여있었고, 생산수단의 상실(농축의 강제판매등)로 인하여 정체물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을 비롯한 국가 및 독점자본의 피해가 겹친 결과 산업에 비군의 저수지로서 기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귀속농지불하를 포함한 농지개혁은 바로 신식민지적 세계질서에 재편된 자본주의적 농업문제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우기 농지개혁의 추진세력을 살펴 볼 때 미군정 및 이승만정부가 지주세력 내지 친지주세력을 배격하고 귀속재산관리 및 불하를 통해 형성된 관료층과 결탁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³³⁾ 미군정당국의 기본전략이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군정 당국에 있어서 일본인 소유지분배의 최대목표가 과격한 혁명 내지 공산주의의 진출을 저지함으로써 남한사회를 세계자본주의 편입시키고 반공국가를 조속히 건설하는데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30) 당시의 인플레이션은 1936년을 기준(100)으로 할 때 1945년 6월 서울에서의 소매물가지수가 272.4, 그 해 9월은 2047.2, 12월은 4359.2이었다.

31) 이대근, 앞의 논문, 424면.

32) 이대근, 「남북분단과 미군정 경제정책의 성격」, 『한국경제론』, 까치, 1987, 63면.

33) 김기원, 앞의 논문, 347면.

이와 같은 입장에서 농업문제 특히 현재의 농업상태를 구체적으로 잉태시킨 계기가 된 농지개혁과 재생소작제에 대한 시각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농업문제 그 자체를 마치 자기완결적으로 한정시켜 보고자 함이 결코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민주주의적 과제달성을 위해 암묵적으로 농업에서의 반봉건성을 전제로 한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해 일정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단후 한국의 농지개혁에 대한 평가는 크게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관별학자들이 주장하는 자본제적 임대차설은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자본제적 임대차설은 앞으로 살펴 볼 3가지 설과는 논리적 수준이 다를 뿐 만 아니라 역사발전상의 전진적 계기로서 다분히 자립적 자본주의를 상정해왔고 개방농정이라는 미명하에 독점자본의 농업지배라는 본질을 외면 내지 은폐시켜왔기 때문이다.

제1설은 지금까지 거의 통설로 인정되다시피 한 견해로서 농지개혁을 계기로 농민적 토지소유가 확립되었다는 金炳台, 兪仁浩 최근의 蔣尙煥 씨의 주장이다. 김병태교수는 “농지개혁의 경위를 돌이켜보는 과정에서 그 불철저성을 엿볼 수 있었고 그 시발점에 있어서 반공을 위한 정치적 외재적 힘에 의하여 강행되어진 것을 엿볼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국에 있어서의 근대적 토지소유제도 확립의 계기가 된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³⁴⁾고 농지개혁을 평가한 뒤, 그 이론적 근거로서 봉건제하의 수취관계를 계속해오던 지주가 농지개혁으로 그 자태를 감추었다는 사실과 봉건적 대토지 소유에 기초한 신분관계나 또 그것을 통한 경제외적 강제외 소멸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농지개혁을 통한 토지소유관계는 “봉건제적 토지소유에서 벗어 났다는 의미에서 근대적인 것이며 이것이 자본제적 차지농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자본제적인 것이라고 규정되고 있거나 지대의 역사적 범주에 있어서도 봉건지대와는 물론 자본제적 지대와도 구별하여 과도적 지대”³⁵⁾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분할지 소농은 “노동자, 자본가, 토지소유자라고 하는 근대적 세계급을 한몸에 겸한”³⁶⁾ 17~18세기 초 유럽대륙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었던 분익소작농과 비슷한 존재라는 것이다.³⁷⁾

농지개혁을 농민적 토지소유 확립의 계기로 보는 제견해는 논자에 따라 편차를 보이지만 일제하의 지주—소작관계를 반봉건적 토지소유로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해방직후 농촌의 계급관계를 지주—소작의 동일로서만 이해한다. 그 결과 토지문제에만 매몰되어 농업위기의 해소책으로서 협업화 내지 농업협동조합의 자유로운 발전을 제시한다. 이것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의 발전적 지양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제2설은 일제시대부터 분단에 이르기 까지 지대론사에 초점을 두어 독점적 금융자본하에서 영세농이 임노동자화한다고 파악하는 김준보교수의 견해이다. 그는 농지개혁을 제국주의에 의한 “건전, 온전한 민주주의의 수립”과 “강력한 압력에 대응한 확실한 방위”³⁸⁾라는 점에서

34) 金炳台, 『韓國農業經濟論』 비봉출판사., 1982, 126면.

35) 金炳台, 앞의 책 127면.

36) 金炳台, 앞의 책 137면.

37) 兪仁浩교수도 “실사 농민적 토지소유의 고전적 형태인 서구의 그것과 세부적인 면에서 차를 가진다 하더라도 유형으로서는 분할지 농민=농민적 토지소유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韓國 農地制度의 研究』, 柏文堂, 1975, 150면.)고 지적하면서 “현금의 농업위기의 토지국면을 중시한 나머지 농지개혁이 농민적 토지소유를 확립하게 되었다는 의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같은 책 148면)고 하여 봉건적 토지소유에서 근대적 토지소유제로 이행하는 과도적 성격의 농민적 토지임을 강조한다.

38) 金俊輔, 『韓國資本主義史 研究』 일조각 1974, 208면.

그 의의를 찾는다. 따라서 농지개혁은 그 성격이 봉건적 소작관계의 해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노동자화 하려는 소작농에 대해 생산수단인 토지를 부여함으로써 중간계급을 형성하고 농촌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기하는데 그 1차적 목적이 있다고 파악한다. 그 결과 “국가적 독점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중간적 지대=이윤의 수취계급인 지주를 배제하고 독점자본과 소농계급을 직결시키는 기구를 형성함에 있어 실적을 가져왔다는 것”³⁹⁾이다.

이 견해는 소작제를 한국 자본주의 속에서 전기구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를 무매개적으로 식민지 한국에 적용했기 때문에 8·15이후에도 세계자본주의의 규정성만을 강조할 뿐 독점자본이 농민계층을 어떻게 지배하는 가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신식민지적 규정을 받는 한국자본주의 발전속에서 현행 재생소작제의 발생 메카니즘을 농지개혁에 대한 그의 평가와 접목시키는 데 난점이 있다. 그 결과 전체구조와 관련하여 농업의 특수성이 전체사회의 일반성과 어떻게 유기적 상호관련을 가지는가 하는 측면에 대해 애매함을 남긴다.

제3설은 현행 재생소작제의 부활⁴⁰⁾에 근거하여 농지개혁을 반봉건적 지배의 타협적인 해소로서 평가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농지개혁은 지주적 토지소유를 해체시키지 못하고 반봉건적 세관계를 유지 온존시킴으로서 자유로운 농민적 토지소유를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농업내부의 반봉건성을 주장하며 농지개혁의 불철저성을 지적하는 황한식 교수는 “반봉건적 지배의 타협적 해소에 따른 전근대적 소작제도의 광범한 재생과 영세 소농체제의 고착은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에 있어 내외 독점 자본의 자본축적과정을 관류하는 저임금, 저농산물가격을 뒷받침하는 기초”를 형성한다고 파악한다. 그 결과 현실의 소작농이 지불하는 소작료는 “전임여노동을 포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통의 경우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가치의 일부까지도 포함”하게 되고 “맹아적 이윤의 형성은 봉건적 소작료와 내외 독점자본의 지배에 제약되며 적어도 소작농의 경우 맹아적 이윤을 일차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전자”⁴²⁾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그는 잉여가치의 유일한 지배적 형태로서 소작료의 고율현상을 반봉건성의 논거로 삼는다.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박현채선생⁴³⁾은 오늘날 농업내부에 있어서 낡은 제도나 유제의 잔존문제를 기초로 재생소작제도의 경제제도적 규정에 대하여 그것의 반봉건적 성격을 주장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⁴⁴⁾ 그는 지양대상인 반봉건의 경제적 기초로서 소경영양식의 정체를 들고 반봉건적 토지소유 또는 지주적 토지소유의 기본적 계기에 더하여 지주에 의한 대토지소유, 고율, 고액의 현물소작료 수취, 신분적 종속으로서의 경제외적 강제를 부차적 계기로

39) 金俊輔, 앞의 책 210면.

40) 1974년 현재 전국 농가의 29.8%, 전국농지의 16.4%가 소작관계에 편입되어있고 1985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4.7%, 30.5%로 증가한 현상을 말한다.

41) 황한식, 「현행소작제도의 성격에 관한연구」, 『한국 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돌베개, 1984, 111면. 한편 황교수는 봉건적 토지소유의 본질은 “생산제조건의 소유자와 직접생산자의 직접적 관계”에서 찾아야 하고 봉건적 토지소유는 자신의 실현방식인 봉건지대와 통일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의 책 74~78면).

42) 앞의 논문, 116면.

43) 박현채선생과 황한식교수의 견해는 봉건적 토지소유의 본질규정에는 차이를 나타내지만 농지개혁에 대한 평가, 현행소작제도의 성격, 고율소작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에 있다. 두 견해의 차별성과 동질성은 김홍상, 「8·15이후 한국농업의 전개과정과 소작제」 『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를 참조하라.

44) 박현채, 『한국농업의 구상』 한길사 1981, 135면.

파악한다. 따라서 그는 지주계급의 존재에 큰 의미를 둘 수 밖에 없으며 이 문제를 역사에 있어서 진보의 기준이라는 틀에다 점목시킴으로써 봉건적 토지소유의 본질이 관철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견해가 근거로 하는 소작제는 기존의 사고방식에 잠재되어있는 계급적 범주로서의 소농에 대립하는 지주를 발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농지개혁을 계기로 일단 계급으로서의 지주는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1983년 현재 토지소유의 상한선인 3ha이상의 토지소유자는 1.2%에 불과하며 소작지의 65%는 비농민지주의 소유이며 대부분이 부재지주이다. 또한 토지없는 혹은 적은 농민은 토지로 부터 분리된 소작농이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노동자의 성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현행 재생소작제의 본질은 지주 소작관계의 확대라는 반봉건성에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법칙과 전기구적 수탈의 결과 농민층의 하강분해와 탈농화현상에서 찾아야한다.

또한 고율소작료는 농업내부의 이윤성립을 제한한다는 측면보다는 한국자본주의의 자본축적과정에서 내외 독점자본의 농업지배측면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박현채선생과 황한식교수 모두 현행소작료가 「잉여노동의 지배적 통례적 형태」라고 말하지만 어떠한 실증도 제시하지 않으면 5할 소작료=봉건시대라는 등식도 성립할 수 없다. 잉여노동은 이론적 추상적 개념이며 그 자체는 어떠한 실태도 지니지 않는다. 그것은 필요노동과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논의를 오직 추상적 차원에서 전개하면 소농경제하에서 지불되는 일체의 지대는 항상 「잉여노동의 유일한 통례적 지배적 형태」일 뿐이다. 왜냐하면 소농은 이론적 정의상 잉여가치의 실현을 요구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농지대=봉건지대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소농적 경영 그 자체는 역사보편적인 것이며 봉건적 소농은 특수역사적 존재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행소작료의 지대범주적 성격 그 자체보다 고율소작료를 지불하게하는 농업내외의 메카니즘, 고율소작료의 농업경영이 갖는 현단계적 의의가 자시기에 있어서 지주 소작관계의 실태에 따라 파악되지 않으면 안된다.⁴⁵⁾

식민지 시대에서 현행 소작제에 이르기까지 제논의를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처음 직면하는 토지소유형태는 자본제적 생산방법에 조응하지 못한다. 자본제적 생산양식에 조응하는 토지소유형태는 농업이 자본의 지배하에 종속될 때 비로소 나타나며 자본제적 생산양식 그 자체에 의해 창조된다. 이와 같이 봉건적 토지소유는 그들의 법률적 형태가 어떻든간에 자본제적 생산양식에 조응하는 경제적 형태로 전화한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의 어떠한 특수성도 본질에 있어서 농업상 법률상 관행상의 상이한 조건에 따라서 상이한 형태를 취하는 자본주의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가 될 수 없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은 자연경제 경제외적 강제에 의한 인격적 예속을 무너뜨리고 자본주의가 일단 농업을 지배하게 되면 자연경제는 상품경제로 전화되고 자본주의 발달에 부합하는 경제적 제형태를 마련한다. 이러한 과정은 동시에 농업내부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달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농업의 자본주의적 발달의 표지로 된다.

45) 김홍상, 앞의 논문 216, 229~230면.

46) 朴珍道, 『現代韓國農民層分解の研究』, 東京大學, 1987, 116면.

V. 결론에 대신하여

70년대까지만해도 농지개혁으로 인한 토지문제가 한국농업의 기본문제이고 가격문제등은 주요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자 현상적으로 들어닥치는 미국의 개방압력에 의한 농축산물 수입으로 농민의 파탄은 강제되었다. 계속 증대되는 농가부채와 소파동등은 농민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상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은 한국의 사회구성에 관한 제논쟁과 맞물려 농업의 성격에 대한 이론상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농업부분의 성격에 대하여 식민지 시대에서 현행소작에 이르기까지 제논의를 비교 검토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과제달성을 위한 물질 조건의 해명과 동시에 반봉건성에 대한 일정한 비판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한국의 농업은 내외 독점자본에 의해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는 역사로 점철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독점자본, 세계 자본주의로의 편입과정은 그대로 농업부분에 각인되고 농업부분의 특수성을 통하여 그리고 농업부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운동법칙이 관철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행 소작제도는 농업내부의 지대로서 생활하는 지주의 확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외 독점자본의 농업수탈에서 촉진된 결과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 구체적 표출형태가 가격문제 수입개방문제 농지세문제 수세문제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의 농업문제는 세계자본주의에 규정받는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논리 및 재생산구조속에서 접근해야만 비로소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는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기존의 논의를 검토·비판하는데 그치고 이론적 수준에서 통일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문제제기만 했을 뿐 완결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